

「식품위생법」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14일

파 주 시



- 제 목: 「식품위생법」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6. 8. 14. ~ 2026. 8. 31.
- 법적근거: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제75조
- 공고대상

업소명 (업 종)	대표자	소재지	처분사유	처분할 내용
못난이 (일반음식점)	곽**	파주시 금정14길 5, 1층	종업원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함(동석작배)	영업정지 1개월 (과징금 같은 제외대상)

5. 고지사항

-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문의사항: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(☎ 031-940-851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